

「2018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18년 7월 2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8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I. 제안이유

2018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

II. 주요내용

-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반영하여 도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 잔액을 반환하고, 2018년도 도비보조금 사업비 변경에 따라 일반보상금 지출액 증가분을 반영하기 위해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기금운용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기 금 명	계 획 액	기정계획액	증감
합 계(8건)	8,247,752	8,227,752	20,000
통합관리기금	349,095	349,095	0
사회복지기금	3,304,246	3,304,246	0
체육진흥기금	1,295,594	1,295,594	0
식품진흥기금	68,544	48,544	20,00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12,840	112,840	0
재난관리기금	1,561,797	1,561,797	0
옥외광고정비기금	48,404	48,404	0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507,232	1,507,232	0

Ⅲ. 기금변경 개요

□ 기금조성규모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과 개별법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용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8개 기금으로 2018년도 기금조성규모는 22,517백만원 임.

[단위:천원]

기 금 명	2018년말 조 성 액	설 치 년 도	소 관 부 서
계	22,517,189		
통합관리기금	8,144,883	2009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기금	7,907,140	2005	주민생활지원과
체육진흥기금	4,486,754	2008	경제체육과
식품진흥기금	110,639	2004	환경위생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40	2018	환경위생과
재난관리기금	611,797	2005	안전건설과
옥외광고정비기금	48,404	2016	도시주택과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207,232	2017	농축산과

□ 기금운용 변경계획(총괄)

- 수입·지출계획은 기정액 대비 20백만원 증액된 총 8,248백만원이며
 - 세입은 전입금 2,413백만원, 보조금 204백만원, 융자금회수 12백만원
예치금회수 5,297백만원, 이자수입 274백만원, 기타수입 48백만원이며,
 - 세출은 비용자성사업비 1,522백만원, 융자성사업비 20백만원
예치금 6,601백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04백만원, 기타지출 1백만원 임.

<기금운용변경내역>

[단위:천원]

구 분	계 획 액		기 정 계 획 액		증 감	
		구 성 비		구 성 비		증 감 륜
총 계	8,247,752	100.00%	8,227,752	100.00%	20,000	41.20%
평창군통합관리기금	349,095	4.23%	349,095	4.24%	0	0.00%
평창군사회복지기금	3,304,246	40.06%	3,304,246	40.16%	0	0.00%
평창군체육진흥기금	1,295,594	15.71%	1,295,594	15.75%	0	0.00%
평창군식품진흥기금	68,544	0.83%	48,544	0.59%	20,000	41.20%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12,840	1.37%	112,840	1.37%	0	0.00%
평창군재난관리기금	1,561,797	18.94%	1,561,797	18.98%	0	0.00%
평창군옥외광고 정비기금	48,404	0.59%	48,404	0.59%	0	0.00%
평창군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1,507,232	18.27%	1,507,232	18.32%	0	0.00%

IV. 검토결과

□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 수입·지출계획

- ▶ 수입은 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20백만원 증가한 54백만원이며 그 외 다른 항목은 기정대비 변경 없음.
- ▶ 지출은 비용자성 사업비인 도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으로 20백만원이 증액된 62백만원을 편성하고, 기타지출로 2017년도 으뜸음식점지원 1백만원 편성, 예치금을 1백만원 감액함.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68,544	48,544	20,000	합 계	68,544	48,544	20,000
보 조 금	54,000	34,000	20,000	비용자성 사업비	62,280	42,280	20,000
예 치 금 회 수	7,929	7,929	0	예 치 금	5,639	6,264	△625
이자수입	1,615	1,615	0	기타지출	625	0	625
기타수입	5,000	5,000	0				

□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의 20%를 초과하는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금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이 기정 계획대비 41.20%인 20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이는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반영하여 도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 잔액을 반환하고, 2018년도 도비보조금 사업비 변경에 따라 일반보상금 지출액 증가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